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송기헌·백승아·민홍철

정성호・박 정・이언주

정준호 · 한병도 · 이재관

이원택・조 국・윤종군

주철현 · 송재봉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 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」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,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금리·고물가·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 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,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 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,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 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). 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의2의 제목 중 "유예"를 "유예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"를 "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 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연장 및 상환 유예"를 "연장,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"으로 한다.

②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대출 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상환기간 연장 및 상	제22조의2(상환기간 연장 및 상
환 <u>유예</u>) ① 공단은 제22조제3	환 <u>유예 등</u>) ①
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	
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	
인정되면 그 <u>상환기간을 연장</u>	<u>상환기간의 연</u>
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	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
	환을 하게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②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
	대출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
	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
	지 유예할 수 있다.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상환기간 <u>연</u>	③ 제1항 및 제2항
<u>장 및 상환 유예</u> 의 기준 및 절	<u>연장, 상환 유예 및 장기</u>
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<u>분할상환</u>
령으로 정한다.	
	,